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30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22279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 고	주식회사 정산인터내셔널
피 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10. 6.
판 결 선 고	2016. 11. 10.

주 문

1. 피고가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88,874,950원, 지방교육세 38,887,49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443,740원 합계 447,206,18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30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주식회사 태광글로벌'에서 2013. 12. 13.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3. 11. 27.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현재 상호는 '주식회사 포스코대우'이다. 이하 '대우인터내셔널'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대우인터내셔널 소유인 부산 강서구 송정동 1746-1(도로명주소 :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382로49번길 11) 토지 77,906㎡ 및 그 지상 건물 총 66,240.55㎡(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포함한 대우인터내셔널의 합성피혁 제조업 등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30. 대우인터내셔널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양수도대금의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우인터내셔널의 2013. 9. 30. 기준 장부상 가액인 91,449,458,812원(= 토지 59,364,372,000원 + 건물 32,085,086,812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657,978,350원, 농어촌 특별세 182,898,910원, 지방교육세 365,797,830원 합계 4,206,675,0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통틀어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11. 24. 피고에게 당초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대우인터내셔널의 2013. 9. 30. 기준 장부상 가액일 뿐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인 2013. 12. 30.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2.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30

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5. 3.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부산광역시장은 2015. 4. 27.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7.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3. 15.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포괄적으로 양수한 이 사건 사업의 순자산금액은 자산부채표상 부채항목에서 본지점간 거래를 표시한 것을 제외하고 장부상 173,896,419,227원인데, 계약상 양수도대금은 157,000,000,000원으로 원고와 대우인터내셔널은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대우인터내셔널 장부 기재 금액에 따라 양수도대금을 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 등을 일괄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9조에 따라 대우인터내셔널의 장부가액 합계액 중 재산세 등 과세대상 물건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비율을 양수도대금에 곱하여 취득가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그 경우 현금성 자산과 채무는 장부가액과 양수도대금에서 각 공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81,727,585,209원인바, 대우인터내셔널의 2013. 9. 30. 기준 장부상 가액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최초 신고한 91,449,458,812원이 취득가액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30

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양수도 자산부채표는 이 사건 계약의 일부인데 위 표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계약 대상 부동산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계약 대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자 취득가액이며, 이 사건 계약상 이 사건 부동산 등 계약 대상 부동산의 취득가격이 명백히 구분되어 있고 그 취득가액은 계약일 이후 거래종결일까지의 증감변동을 반영한 확정적인 금액이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포괄적으로 양수한 이 사건 사업의 순자산금액은 장부상 119,371,714,639원이고 계약상 양수도대금은 157,000,000,000원으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을 할증된 금액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방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현금성 자산과 채무 등은 장·단기 금융상품으로 현금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이를 장부가액과 양수도대금에서 각 공제할 근거도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2013. 12. 19.자 감정평가금액은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실행을 위한 평가액으로 원고와 대우인터내셔널 사이의 거래가액이 아니고 원고가 2013. 12. 31. 원고 장부에 계상한 금액도 취득일 다음날의 금액으로 원고의 취득 당시의 금액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91,449,458,812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30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와 대우인터내셔널 사이에 2013. 11. 27.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양도인은 대우인터내셔널을, 양수인은 원고를, 대상사업은 이 사건 사업을 각 가리킨다).

전문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382로49번길 11(송정동) 소재의 사업장에서 합성피혁 제조업 등의 사업("대상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양도인은 대상사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며, 양수인은 이를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하고자 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1) 거래종결은 양도인이 본 계약에 따라 대상사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이와 동시에 양수인이 양수도대금 중 잔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거래종결일은 이러한 거래종결이 이루어지는 날로서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날을 의미한다.

(2) 거래기준일이라 함은 사업양수도 기준일로서 예비실사 기준일인 2013. 5. 31. 이후 정산실사 기준일인 2013. 9. 30.을 의미한다.

(4) 대상사업은 양도인이 영위하고 있는 영업의 일부로서 본 계약의 전문에서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대상사업의 양수도

(1) 대상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본 계약에 따라 양도인은 본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양수도 대상자산 및 양수도 대상채무로 명시된 자산과 채무로 구성되는 대상사업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다. 다만, 당사자들은 본 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양수도 제외자산 및 양수도 제외채무로 명시된 자산과 채무는 양수인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이전 또는 양도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한다.

(2) 양수도 대상자산

양도인은 대상사업의 양수도에 따라 거래종결 시에 아래 열거된 각 유형의 양수도 대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30

자산(총칭하여 "양수도 대상자산")을 거래종결일 현재의 상태대로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① 첨부 1에 기재된 양수도 대상자산부채표상의 자산

(3) 양수도 대상채무

양도인은 대상사업의 양수도에 따라 거래종결 시에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아래 열거된 각 유형의 양수도 대상채무(총칭하여 "양수도 대상채무")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도인으로부터 면책적으로 양수 및 인수한다.

① 첨부 1에 기재된 양수도 대상자산부채표상의 채무

다만, 이상 기대된 양수도 대상채무들에는 본 계약일부터 거래종결일까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 따른 발생, 소멸 및 증감 변동이 반영된다.

제3조 양수도대금

(1) 양수도대금

양수인은 거래종결일까지 양도인에게 대상사업의 양수도 대가 157,000,000,000원(이하 "양수도대금")을 양도인이 지정하는 양도인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4조 거래종결

(1) 거래종결 일시 및 장소

본건 거래의 거래종결은 본 계약 제5조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거나 권한 있는 당사자에 의하여 그 충족이 면제된 것이 확인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2) 자산 및 채무의 이전

거래종결이 이루어지면 양수도 대상자산과 양수도 대상채무는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이전대상 근로자는 양수인이 승계한다.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양수도 대상자산 및 양수도 대상채무의 이전, 이전대상 근로자의 승계는 거래종결일 한국시각 23:59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2)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첨부1 양수도 대상자산부채표'에는 대우인터내셔널의 2013. 9. 30. 자산 등 현황으로 자산 총계는 205,986,962,424원, 부채 총계는 86,615,247,785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 자산 총계에는 유형자산 중 토지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30

액 59,904,997,799원, 건물가액 32,588,001,077원이 각 포함되어 있었으며, 위 부채 총계에는 '본지점' 계정 과목상 54,524,704,588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대우인터내셔널에 2013. 11. 29. 계약금 15,7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12. 30. 잔금 141,300,000,000원을 지급한 후, 잔금지급일인 2013.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대우인터내셔널의 2013. 9. 30. 기준 장부가액 91,449,458,812원(= 토지 59,364,372,000원 + 건물 32,085,086,812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4) 원고와 대우인터내셔널은 2013. 12. 31. 같은 날을 거래종결일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원고는 원고의 2013. 12. 31. 기준 장부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합계 81,357,405,448원(= 토지 59,208,560,000원 + 건물 22,148,845,448원)으로 계상하였다.

5) 한편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9.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는데, 그 감정평가서상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격은 합계 81,326,049,620원(= 토지 59,208,560,000원 + 건물 22,117,489,620원)이다.

라. 판단

1)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위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는 법인 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30

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는 위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법인장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인의 장부가액 등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 등 참조).

2) 위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2,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3. 9. 30. 기준 대우인터내셔널의 장부상 가액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와 대우인터내셔널은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이 사건 사업의 양수도대금을 157,000,0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원고와 대우인터내셔널 사이에 대우인터내셔널의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전체적으로 평가한 후 협의를 거쳐 양수도대금 총액에 대해서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하여 장·단기 채권·채무 등 각 자산별 가액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총액을 산정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약서 등에 기재된 이 사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30

부동산 등의 장부가액에 나머지 자산 등의 가액을 합산하여 양수도대금을 산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②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첨부1 양수도 대상자산부채표' 중 부채로 기재되어 있는 '본지점' 계정은 대우인터내셔널의 본점과 이 사건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산 소재 지점 사이의 내부거래에 관한 것으로 계산 편의를 위해 마련된 임시 계정이고, 이는 대우인터내셔널 외부에서 볼 때 내부거래의 결과에 불과하므로 대우인터내셔널의 사업연도 말에 작성되는 외부보고 목적의 재무제표에서는 상계·제거하여야 할 대상에 해당한다. 대우인터내셔널의 2013. 12. 31.자 감사보고서상으로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전된 자산 합계는 208,114,000,000원, 부채 합계는 33,093,000,000원으로 순자산이 175,021,000,000원이라고 기재(각 1,000,000원 단위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본지점' 계정을 제거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에 '본지점' 계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대우인터내셔널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대우인터내셔널 내부거래에 의해 발생한 지점의 본점에 대한 채무를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위 '본지점' 계정에 기재된 부채 54,524,704,588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채를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해 대우인터내셔널의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이 사건 부동산 등 자산을 대우인터내셔널의 기존 장부가액보다 할인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3. 12. 19. 기준 감정가격은 합계 81,326,049,620원(= 토지 59,208,560,000원 + 건물 22,117,489,620원)으로, 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2013. 12. 31. 기준 장부상 취득가액 합계 81,357,405,448원(= 토지 59,208,560,000원 + 건물 22,148,845,448원)과 유사한 반면, 대우인터내셔널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30

2013. 9. 30. 기준 장부상 가액 91,449,458,812원(= 토지 59,364,372,000원 + 건물 32,085,086,812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마. 소결

따라서 원고가 대우인터내셔널의 2013. 9. 30. 기준 장부상 가액에 따라 신고하였던 취득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피고로서는 원고의 경정청구에 따라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 및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판사 기진석

판사 백상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30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19조(토지 등의 일괄취득)

①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30

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토지와 건축물 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끝.